

「2021서울모터쇼」 참가업체 모집 공고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목)부터 11일(일)까지 KINTEX에서 개최되는 「2021서울모터쇼」 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협회) 공인 국제모터쇼로서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 자동차 문화를 담아내는 국내 최대의 산업전시회입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브랜드 제고, 마케팅 강화, 관련 기업간의 협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2021서울모터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서울모터쇼 개요

가. 전시기간 : 2021. 7. 1(목)~11(일) (11일간)

- 프레스데이 : 7. 1(목)
- 일반인 관람 : 7. 2(금)~11(일) (10일간)

나. 장 소 : 킨텍스(KINTEX)

다. 주 제

- Sustainable · Connected · Mobility(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
 -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
 - 무한한 연결이 가능한 지능화된 자동차
 - 기존 이동수단을 뛰어넘는 모빌리티의 새로운 비전

라. 부대행사

- 자동차와 IT융합 세미나
- 자동차안전체험,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차 시승행사
- 비즈니스상담회, 기술세미나 등

마. 주 최 :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KAMA, KAIDA, KAICA)

※ KAMA(한국자동차산업협회), KAIDA(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C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2. 참가 신청

가. 참가대상 : 다음과 같은 제품, 기술, 서비스를 전시하고자 하는 업체, 단체, 기관

- 승용차, 상용차, 슈퍼카, 튜닝카 및 캠핑카, 이륜차, 타이어
- 자동차 부품, 소재 및 용품(장식품, 액세서리 및 보조기기 등)
- 자동차 관련 IT, 디자인, 관련 기술
- 자동차생활문화 관련 제품 및 서비스
- 기타 자동차산업이나 자동차문화와 연관되는 분야

나. 참가신청기간 : 2020. 10. 15(목) ~ 12. 31(목)

다. 참가비

① 일반전시

- 독립식 부스 : 참가업체가 배정된 전시면적에 자체적으로 전시 구조물을 설치·공사하는 부스
- 조립식 부스 : 주최자가 전시공간으로 설치·공사하여 제공하는 부스(1부스=3m×3m)

(부가세 별도)

독립식 부스	조립식 부스
220,000원/m ²	2,600,000원/부스

※ 주최자가 기획한 특별전시전 및 전략적 유치활동에 따라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시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참가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용품판매전시

- 관람객 대상으로 자동차 관련 용품(장식품, 액세서리 및 보조기기 등)을 전시·판매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스

(부가세 별도)

독립식 부스	조립식 부스
300,000원/m ²	3,300,000원/부스

라. 참가신청

- ① [별첨 1] 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의 50% 이상을 납부하여야만 참가신청이 유효함
- ② 신청마감일인 2020년 12월 31일(목)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최자가 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할 수 있음
- ③ 주최자가 기획한 특별전시전 및 전략적 유치활동에 따라 참가하는 업체의 참가신청과 참가비 납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적용함 (외국기관이 다수의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참가하는 경우 포함)
- ④ 독립식 부스 신청

- 아래에 제시된 전시면적 기준에 따라 신청
 - 완성차업체는 100㎡ 단위로 신청토록 함.
 - 완성차업체를 제외한 참가업체는 최소 36㎡ 이상 신청하며, 부스설계를 고려하여 9㎡ 단위로 추가 신청토록 함
- 100㎡ 이상 신청한 참가업체는 주최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복층 구조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다수의 기업을 유치하여 참가하는 별도의 협회나 기관(단체)은 주최자와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독립부스 내에 소수 참가기업들의 전시공간을 자체 구성할 수 있음
- 연속 참가사에 대한 혜택

구분	내용
최근 3회('15, '17, '19) 연속 참가사	신청면적의 5% 면적 추가 제공
최근 4회('13, '15, '17, '19) 연속 참가사	신청면적의 8% 면적 추가 제공
최근 5회('11, '13, '15, '17, '19) 이상 연속 참가사	신청면적의 10% 면적 추가 제공

※ 단, 이번 회차 독립부스 100㎡이상 신청한 기업에 한함 (타 할인제도와 중복 불가)
 - 과거 연속 참가 이력은 참가면적이 아닌 횟수만 적용

⑤ 조립식 부스 기본제공 사항

- 3면 칸막이(부스 위치에 따라 1~3면만 칸막이 설치 가능)
- 국·영문 상호 간판 및 부스번호판
- 전기(단상 220V 1kW) 배선, 콘센트 및 조명등
- 부스 내부 바닥 파이텍스, 안내 데스크 및 의자 각 1개

⑥ 참가비에는 전시장 임차료, 전시장 관리에 따른 경비·청소 등 공동 용역비, 전시홍보비 등 포함

※ 전기, 전화, 압축공기, 급배수 등 각종 부대시설 사용료와 전시장 임차료에 포함된 전시장 이용시간(08:00~20:00) 이외의 전시장사용료 등 킨텍스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시설사용료는 참가업체가 별도 부담

⑦ 참가신청서류는 서울모터쇼 홈페이지(www.motorshow.or.kr)를 통해서 신청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에 소속된 회원사의 경우 해당 협회를 통해서 신청 가능
- KAMA와 다수 기업의 모터쇼 참가 유치에 관한 공식협약을 체결한 협회 또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 또는 기관(단체)을 통해서 신청

마. 참가비 납부

- 참가비는 지정 은행계좌에 직접 납부
 - 신한은행 140-005-228472(SHBKKRSE)
(예금주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 참가비는 원화로 납부하고, 은행송금 관련 수수료는 참가자 부담
- ※ 지정된 계좌에 입금 완료된 시점을 참가신청 기준으로 함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부가세 면제)에 따라 참가비 납부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
- 신청마감일인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100% 완납할 경우 참가비의 10% 할인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
 - 단, 중복할인 불가
- 2020년 12월 31일(목)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업체는 참가신청과 함께 참가비의 100%를 완납해야 함
- 2020년 12월 31일(목) 이전까지 참가비 50%이상을 납부하고 최종납입기간을 경과한 1개월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업체 신청을 해지하고 미납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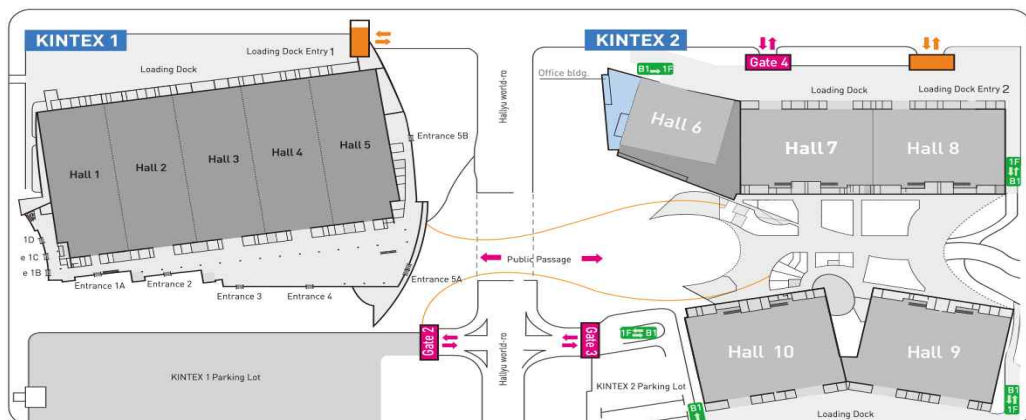
바. 전시위치 배정

-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전시면적 규모 순, 동일 면적시 참가신청 (참가비의 50% 이상 납부) 순으로 전시위치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상기 원칙에 따른 배정이 어려울 경우 전회 서울모터쇼 참가 면적, 최근 3회 서울모터쇼 참가횟수 등의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함
 - 단, 수입차업체(참가비의 50% 이상을 납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별도로 정한 방식에 따라 전시 위치와 면적을 배정함
- 주최자가 모터쇼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참가업체는 전시위치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음
- 주최자는 자동차관련 용품(장식품, 액세서리 및 보조기기 등)을 전시·판매하는 목적으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전시품특성과 전시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임의로 전시공간을 배정할 수 있음
- 참가신청 면적이 주최자가 확보한 전시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최자가 모든 참가업체의 신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함(최근 3회 서울모터쇼 참가횟수를 고려하여 업체간 조정률에 차등을 둘 수 있음)
- 참가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간 상호교환 할 수 없음

사. 참가업체는 [별첨 3] “2021서울모터쇼 참가관리 규정” (제 2020-1호)을 준수해야 함.

※ “2021서울모터쇼 참가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의 보충규정인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과 “2021서울모터쇼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은 서울모터쇼 홈페이지(www.motorshow.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상기 지침과 관련된 각종 서식 및 지정업체 안내는 향후 공지 예정

<참고> 킨텍스 전시장 구성도



3. 신청서류 제출

가.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1부([별첨 1] 서식 사용)
 - 단, 서울모터쇼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참가업체는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작성단계와 양식에 따라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별첨 2] 서식 사용)
 - * 외국법인(기업)이 자사의 한국내 법적 대리법인(에이전트, 딜러, 지점 등)이 없어 제3의 법인(기업)을 통해 모터쇼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는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단, 해외자동차 제조업체와 공식 수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모터쇼 참가 불가)
- 제품 카탈로그(용품판매전시 신청업체에 해당)

나. 제 출 : 서울모터쇼 홈페이지,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일

①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홈페이지 : www.motorshow.or.kr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5(자동차회관)
- 전 화 : 02-3660-1892, 팩 스 : 02-3660-1901
- 이 메 일 : motorshow@kama.or.kr

②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1(PSG빌딩 6층)
- 전 화 : 02-518-9924, 팩 스 : 02-518-9926
- 이 메 일 : kaida@kaida.co.kr

③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62길 9-22(자동차산업회관)
- 전 화 : 02-587-0016, 팩 스 : 02-583-7340
- 이 메 일 : zaphy@naver.com

[별첨 1]

2021서울모터쇼 참가신청서(계약서)

참가업체

회사명 (단체/협회/기관)	국문		대표자	
	영문			
주 소				
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회사 홈페이지	
전시품목				

전시면적 신청 및 참가비

■ 일반전시

(부가세 별도)

구 분	참가비 단가	전시신청 면적	참가비 총액
독립식 부스	220,000원/m ²	m ²	
조립식 부스	2,600,000원/부스	부스	

주) 1부스 = 3m×3m

■ 용품판매전시

(부가세 별도)

구 분	참가비 단가	전시신청 면적	참가비 총액
독립식 부스	300,000원/m ²	m ²	
조립식 부스	3,300,000원/부스	부스	

주) 1부스 = 3m×3m

참고사항

■ 참가신청서는 서울모터쇼 홈페이지(www.motorshow.or.kr), 우편, 팩스 및 이메일 (motorshow@kama.or.kr) 중 택일하여 제출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에 제출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다수 기업의 서울모터쇼 참가 유치에 관한 공식협약을 체결한 협회 또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나 기관(단체)에 제출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서울모터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 참가비 지정은행 계좌

- 신한은행 140-005-228472(SHBKKRSE), 예금주(한국자동차산업협회)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참가비 납부시 부가세 10% 제외한 금액을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

■ 문 의

- 서울모터쇼조직위/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 전화 02-3660-1892, 팩스 02-3660-1901
-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 전화 02-518-9924, 팩스 02-518-9926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 전화 02-587-0016, 팩스 02-583-7340

2021서울모터쇼 참가업체 모집공고(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공고 제2020-1호)와 2021서울모터쇼 참가관리 규정(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규정 제2020-1호)을 준수하고, 양 규정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할 것을 서약하며, 본 계약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자명	서명
-------	--	------	----

[별첨 2]

위 임 장

■ 외국 참가업체(위임자)

회 사				
주 소				
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이메일	
	휴대전화		전 화	

당사는 2021서울모터쇼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 업체를 한국내 대리업체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하며, 아울러 2021서울모터쇼 참가업체 모집공고(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공고 제2020-1호)와 2021서울모터쇼 참가관리 규정(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규정 제2020-1호)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대표자 또는 부서 책임자) :

성 명 :

서명

■ 한국 대리업체(수임자)

회 사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이메일		
	휴대전화		전 화		

2021서울모터쇼 참가관리 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 ① “모터쇼”라 함은 2021서울모터쇼를 말한다.
- ② “참가업체”라 함은 본 모터쇼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참가비를 납부하고, 모터쇼 전시기간 동안 본규정에 따라 전시품을 전시하는 업체 (단체 및 기관 포함)를 말한다.
- ③ “주최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 (전시품목) 모터쇼에 전시가능한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승용차, 상용차, 슈퍼카, 튜닝카 및 캠핑카, 이륜차, 타이어
- 자동차 부품, 소재 및 용품(장식품, 액세서리 및 보조기기 등)
- 자동차 관련 IT, 디자인, 관련 기술
- 자동차생활문화 관련 제품 및 서비스
- 기타 자동차산업이나 자동차문화와 연관되는 분야

제3조 (참가신청)

- ① 참가신청서류는 서울모터쇼 홈페이지, 우편, 팩스, 이메일 중에서 택일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를 통해서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 ③ KAMA와 다수 기업의 모터쇼 참가 유치에 관한 공식협약을 체결한 협회 또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나 기관(단체)을 통해서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서울모터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 ⑤ 참가신청서 제출시 제4조에 따라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참가신청이 유효하다.
- ⑥ 신청마감일인 2020년 12월 31일(목)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최자가 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 ⑦ 주최자가 기획한 특별전시전 및 전략적 유치활동에 따라 참가하는 업체의 참가신청과 참가비 납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적용한다(외국기관이 다수의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참가하는 경우 포함).

제4조 (참가비 납부)

- ① 참가비는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 ②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의 50% 이상을 납부해야하며, 잔금은 2021년 3월 31일(수)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 ③ 신청마감일인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100% 완납할 경우 참가비의 10% 할인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
- ③ 2020년 12월 31일(목)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업체는 참가신청과 함께 참가비의 100%를 완납해야 한다.
- ④ 2020년 12월 31일(목) 이전까지 참가비 50% 이상을 납부하고 최종납입기간을 경과한 1개월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업체 신청을 해지하고 미납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전시위치와 면적 배정)

- ①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전시면적 규모 순, 동일 면적시 참가신청(참가비의 50% 이상 납부) 순으로 전시위치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기 원칙에 따른 배정이 어려울 경우 전회 서울모터쇼 참가면적, 최근 3회 서울모터쇼 참가횟수 등의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다. 단, 주최자가 참가신청 현황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에 배정된 전시위치와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② 수입차업체(참가비의 50% 이상을 납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별도로 정한 방식에 따라 전시위치와 면적을 배정한다.
-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수의 소속 회원사가 참가 신청한 협회나 기관(단체)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소속 회원사의 전시위치 및 면적 배정을 결정한다.
- ④ 주최자가 모터쇼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참가업체는 전시위치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 ⑤ 주최자는 자동차관련 용품(장식품, 액세서리 및 보조기기 등)을 전시·판매하는 목적으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전시품특성과 전시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임의로 전시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 ⑥ 참가신청 면적이 주최자가 확보한 전시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최자가 모든 참가업체의 신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으며, 최근 3회 서울모터쇼 참여횟수를 고려하여 업체간 조정률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⑦ 참가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간 상호교환 할 수 없다.

제6조 (모터쇼의 취소 및 변경)

- ① 주최자가 천재지변, 긴급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이나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모터쇼를 취소 또는 변경, 중단할 경우에 주최자는 이러한 사유로 참가업체에 발생한 손실(참가비, 전시 장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등)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 ② 주최자는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터쇼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제1항과 같이 주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주최자가 임의 취소 등 귀책사유로 모터쇼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환불함으로써 참가업체에 대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7조 (참가업체의 참가계약 해지·취소 및 위약금)

- ①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2021서울모터쇼 참가업체 모집공고”(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공고 제2020-1호)와 “2021서울모터쇼 참가관리 규정”(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규정 제2020-1호)을 위반할 경우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참가비에서 아래표에 따른 해약금을 차감하여 이자없이 환불한다.

해 지 시 기	해 약 금
2021. 1. 1 - 2021. 1. 31	전체참가비의 30%
2021. 2. 1 - 2021. 2. 28	전체참가비의 50%
2021. 3. 1 - 2021. 4. 16	전체참가비의 80%
2021. 4. 17 - 2021. 6. 30	전체참가비의 100%

- ② 참가업체가 전시참가를 취소하거나 전시배정 면적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주최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주최자는 기준액에서 아래표에 따른 위약금을 차감하여 이자없이 환불한다.

취 소 시 기	위 약 금
2021. 1. 1 - 2021. 1. 31	기준액의 30%
2021. 2. 1 - 2021. 2. 28	기준액의 50%
2021. 3. 1 - 2021. 4. 16	기준액의 80%
2021. 4. 17 - 2021. 6. 30	기준액의 100%

※ 기준액=(취소면적/배정면적)×전체참가비

※ 배정면적은 전시면적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시 신청면적으로 본다.

- ③ 제2항의 취소시점은 참가업체의 전시참가 취소공문이 주최자에게 도착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전체참가비”는 참가업체가 주최자에게 납부해야 할 총 참가금액을 말한다. 단, 참가비 완납으로 10% 할인받은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전시부스 설치 및 전시장 관리)

- ① 참가업체는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과 “2021서울모터쇼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에 따라 자사 부스를 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시에 따른 원활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의 설치 및 관리, 철거함에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준수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 내에서 발생한 손상, 도난, 화재나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④ 참가업체는 전시장 시설물 및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훼손 및 파손할 경우에는 전시부스 철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주최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 ⑤ 참가업체가 제1항에 따른 요령과 제반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최자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참가업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전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⑦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제2조에서 제시한 품목이외의 품목을 사전 허가 없이 전시·판매하여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 전시장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2회 경고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제9조 (보험부보)

- ① 주최자는 전시기간중 전시장내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인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② 참가업체는 부스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서울모터쇼 전 기간동안 자사 부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보충규정)

- ①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과 “2021서울모터쇼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은 본 참가관리 규정의 보충규정이 되며, 참가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전시장 운영주최자 또는 대내외 전시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제1항의 보충규정이 추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참가관리 규정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되,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